
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준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18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11.

발 의 자 : 한준호 · 정준호 · 전현희
정태호 · 박상혁 · 강준현
박균택 · 김태선 · 박홍배
김원이 · 김용만 · 최혁진
복기왕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정밀안전점검 등에서 일정 안전등급을 받는 경우 관리주체가 보수·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 또한, 관리주체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관리주체가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·보강 등 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없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중의 안전을 우선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관리주체가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

으로써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24조제4항 신설 등).
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행정대집행법」을 준용한다.

1.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
2. 제2항에 따른 이행 및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

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이거나 알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안전조치 대행에 관한 적용례) 제24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관리주체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행 및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.

<p>④ (생략)</p>	<p><u>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 다.</u> ⑥ (현행 제4항과 같음)</p>
---------------	---